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(사회적경제계정)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22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저성장과 고금리 등 금융환경의 악화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
돌봄·주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·소셜벤처 기업들의
경영환경이 위축되고 있음
- 나. 서울시는 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이 높은 사회적경제·소셜벤처 기업
들을 선별·육성하고 민간의 금융투자를 유도하는 벤처투자 펀드를
조성·운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2025년
중소기업육성기금(사회적경제계정) 출자 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출자근거
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
 -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제4항
 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의2
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
- 나. 출자방향
- 공익성(중소기업 성장 유도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 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 -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, 육성 지원으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

다.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라.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

마. 출자의 필요성

- 사회적기업(소셜벤처)은 공공을 대신하여 돌봄, 교육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
-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조합 결성·출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, 사회적경제·소셜벤처 기업의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를 도모함

〈 공공재원을 통한 투자조합 운영 성과 〉

- ▶ 고용노동부 투자조합('11년~'22년, 468억)은 61개 기업에 투자한 결과 매출액 4.3배 (2,404억원 → 1조2,671억원), 고용 2,515명(1,189명 → 3,704명) 증가¹⁾
- ▶ 서울시 투자조합('18년~'23년, 595억)은 57개 기업에 투자한 결과 매출액 2.6배 (83,049억원 → 289,921억원), 고용 1천여명(1,618명 → 2,631명) 증가

- 벤처투자 시장은 '21년 이후 신규 출자액(조합)이 큰폭으로 감소 했으며, 연간 투자 집행 규모의 감소로 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 가중²⁾
 - ▶ 신규 출자액(조합) : '21년 9.5조원(404개) → '23년 6.5조원(290개), △3조원(114개)
 - ▶ 투자 집행액(기업) : '21년 7.6조원(2,438개) → '23년 5.3조원(2,281개), △2.3조원(157개)
- 특히,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후기단계 기업으로 자금공급 쏠림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부족이 매우 심각함³⁾
 - ▶ 초기기업 신규투자 비중 : '19년 32%(1.4조원) → '23년 24%(1.3조원)
 - ▶ 후기기업 신규투자 비중 : '19년 26%(1.1조원) → '23년 37%(2.0조원)

1)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, 2023.3월 언론보도자료

2) 국회예산정책처,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(2024년)

3)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2023년 4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

3. 투자조합 출자 계획

가. 추진방향

-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제고 위해 보조금 축소하고 간접지원 전환
-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금융 투자 유도
-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·성장 기업을 우선 지원
 - ▶ 초기기업 지원 : 약자동행 엔젤펀드 60억
 - ▶ 성장기업 지원 : 약자동행 스케일업 펀드 200억

나. '25년 펀드 출자 계획안

- 펀드명 : 서울시 약자동행 펀드(가칭)
- 결성목표(市 출자액) : 260억원 내외(최대 60억원)

분 야	결성목표액	市 출자액	주요사항
약자동행 엔젤펀드	60억 내외	40억	■ 초기기업 -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의 창업 7년 이내 기업
약자동행 스케일업펀드	200억 내외	20억	■ 성장기업 - 창업 7년 이내 기업

- 자금구성 : 시 출자금 + 운용사(GP) + 기타 자금 등
- 운용기간 :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
- 출자조건 : 투자대상*에 부합하는 기업에 시 출자액의 일정 배수 (엔젤펀드 100%, 스케일업펀드 200%) 이상을 투자

*투자대상 : 서울시소재 & 사회적경제기업(소셜벤처) & 창업 7년 이내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

제11조의2(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중소기업기금(사회적경제계정) 운용계획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지관우(☎ 2133-5485)
추창완(☎ 2133-5490)